

아프리카 경제통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 지역적 국제기구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

박 기 갑

이 연구논문은 탈식민지화 이후인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 상호간에 형성한 각종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을 개관 및 평가하고, 장래 새로운 아프리카 전체 차원의 경제통합움직임을 전망하기 위해 쓰여졌다.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에 대해서는 북부, 서부, 중부, 동부 및 남부지역등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각 움직임의 초기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 우월요소를 가진 중심국이 출현했다는 점, 2) 다양한 경제통합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등 그 결과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3) 동일한 지역에 여러개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이 병존함으로써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장래 새로운 아프리카 경제통합움직임으로서 1991년 OAU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낸 AEC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아프리카 전체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점진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며, 2) 구체적인 계획표를 가진 기존 지역적 경제통합의 상위 기구로서의 존재를 예정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결론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부진한 이유분석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참여하는 국가의 정치적 적극성 여부와 적절한 통합전략의 수립을 지적하였다.

I. 서론

전세계는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재통일등으로 상징되는 이데올로기 대립구도의 소멸과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민족주의의 발호로 말미암은 국지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기주의는 새로운 경제전쟁으로 치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아프리카대륙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가령 지난 94년 4월초 시작된 루완다의 내전, 소말리아의 내전, 그리고 아프리카 최대국 중의 하나인 나이지리아의 분규, 그리고 알제리에서는 회교원리주의자들의 거센 움직임등으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다.

이 와중에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을 살펴보는 실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식민지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생국

* 이 글은 교육부의 93년도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들이 성립되고 난 후에도 대부분의 나라가 아직도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바로 그 때문에 복잡한 정치적 분쟁을 야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아프리카 대륙의 몸부림이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곧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여진다.

이 연구논문의 목적은 아프리카 대륙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요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을 개괄하여 살펴보고, 그 시행착오를 검토하여 국외자적 입장에서 장래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부분에서는 이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아프리카의 제반 환경을 언급한다.

1. 주요 용어 개념정의

이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주의(regionalisme)

국가간 경제관계의 장벽을 철폐하는데 있어 지역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도등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특정국가들끼리 자유, 무차별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경제상의 흐름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려는 GATT의 다자간주의(multilateralism) 내지는 국제주의(globalism)에 상반되는 개념이다(산업연구원, 1989:1).

2) 지역적 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20세기 중반이후 국제경제와 국제정치에서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중의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는 경제통합움직임은 다양한 의미를 띄고 있다.¹⁾ 이 개념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 관세동맹(customs unions), 공동시장(common markets), 경제동맹(economic unions 또는 federations)등과 같은 여러 형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네가지 형태는 뒤로 갈수록 점점 통합의 높은 단계를 의미한다. 이들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Carrey et al., 1990:66-67).

- 자유무역지대: 회원국간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와 양적 제한조치가 철폐되지만 비회원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관세권을 가진다.

1) 경제통합의 제반이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국회사무처, 1989:9-33; 김기환, 71; Robson, 1968:11; Coussy & Hugon, 1991:32)

이는 경제통합형태중 가장 초보적 단계로서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이 대표적인 예이다.

- 관세동맹: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체제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동일관세체제를 유지한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결성했던 Benelux가 이에 해당한다.

- 공동시장: 더욱 발전된 형태로서 자유무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간 생산품의 자유이동을 막는 모든 또는 일정한 요인을 제거한다.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이에 해당한다.

- 경제동맹: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재정, 통화와 다른 경제정책수단이 조율되거나 단일화된다. 유럽동맹(EU)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경제통합형태는 그 결속도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두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첫째, 독립된 국가상호간에 교역장애요인을 제거하든지 현격히 완화시킴으로써 그들간의 교역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합과 동시에 둘째,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주의를 채택한다(Robson, 1968:25).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진행중인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은 위 네가지 형태중 어느 과정에 속하며 또한 어떠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움직임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지역적 경제협력(regional economic cooperation)'에 불과한가 아니면 진정한 통합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 경제협력이란 참여하는 회원국의 주권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만장일치로서 운영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모색될 것이다. 참고로 어떤 학자는 아프리카 지역에는 회원국이 정치적 독립성을 계속 유지한 채 회원국간 경제협력을 완성시키며, 회원국들은 공동관세채택, 사람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시장형성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가 추구해 온 바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Johnson, 1991:2). 어쨌던 이 글에서는 '통합'이란 표현을 편의상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한다.

2. 아프리카의 제반환경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양적 팽창과 질적 빈곤'이다. 즉 '양적 팽창'이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극하는 요인이라면 '질적 빈곤'은 반대로 부정적 측면에서 자극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1) 양적 팽창

1) 신생국 숫자의 급증: 유엔이 창설되던 1945년 아프리카대륙에서 유엔회원국이었던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다.(이집트, 이디오피아, 라이베리아, 남아연방공화국) 그리고 1960년말에는 전체 회원국수의 25%를 차지하였고, 1987년말에는 51개국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비동맹국가 모임에서도 50%이상을 아프리카대륙에서 차지하고 있다.²⁾ 그런데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나라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내지는 최빈국의 상태(가령 모잠비크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70\$, 루완다는 260\$)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국토의 면적, 인구수등으로 볼 때도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독자적인 정치-경제정책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이다.³⁾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은 이들 개별적 자국 경제발전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Nowzad, 1971:201).

2)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양적 팽창의 두번째 요소로서 1970년을 전후로 제 3세계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로서 NIEO는 선진국 중심의 기존 국제교역원리에서 무시되었던 개도국의 권리를 강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 특히 NIEO는 발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서 개도국간 지역적 경제협력을 강조하였던 바, 이에 대해 수많은 결의안을 창출해냈다. 가령 1968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결의안 23(II)은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과 확대가 국제발전전략의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개도국간 경제통합이 그들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74년 5월에 채택된 UN 총회 결의안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선언’ 제 7조 1항 c)에서 “개발도상국간의 지역 그리고 하부지역적 차원의 경제통합을 촉진, 확립 또는 강

2) P.I.Onwuka & T.M.Shaw(ed), Africa in world Politics: into the 1990s, p.33.

3) 빠른 인구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사하라사막 남부지역 아프리카는 만성적 인구부족을 보이고 있다. 1992년 통계로 전체인구는 5억 5천만명인데 46개국중 단지 6개국만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즉 나이지리아(1억 1500만명으로 총인구 20%선), 이디오피아(5100만명), 케냐와 탄자니아(각각 2600만명), 남아연방공화국(3800만명), 자이레(3700만명)등이다. 위의 5개국은 영여권으로 사하라사막 남부지역 총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 40개국은 모두 1800만명 이하의 인구이다. 이 중 2/3인 33개국은 천만명을 넘지 못한다. 더우기 1/3에 해당하는 14개국은 2백만명도 채 되지않는다. 인구의 대부분은 유아와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성적 노동력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전염병의 만연과 계속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노동력은 더욱 부족하다. 자료: *le Monde Diplomatique*, 1993년 5월호, p.19

4)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I,Seidl-Hohenveldern, 1986:24) 이하 참조.

화한다”라고 명시하여 경제통합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⁵⁾ 아울러 역시 1974년 12월 UN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 제 12조에서도 “국가들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관련국가와의 합의하에 지역상호간, 지역간 및 하부지역간 협력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비록 권고안으로서 법적 의무감을 갖지는 않지만 앞의 결의안 내용보다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였다.⁶⁾

(2) 질적 빈곤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또다른 차원의 요인으로서 는 외채의 급증으로 인한 공동대처방안의 모색을 들 수 있다. 1992년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리카 전체 외채는 29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액수는 1980년보다 2배 늘어난 것이며, 이 액수 중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체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외채는 1830억 달러이다.⁷⁾ 참고로 1982년 통계에 의하면 사하라사막 이남 45개 아프리카 국가의 총외채액수는 878억 달러로서 이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Adedeju, 1985:53-74, 특히 p. 54 참조). 물론 이러한 액수는 전체 지구상의 외채의 1/5에 지나지 않고, 브라질과 멕시코 이 두 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총외채가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전체 국가가 지고 있는 액수와 동일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는 별 문제 없다는 시각이 대두될 수 있다. 그러나 비율로 따져 볼 때 아프리카의 경우 외채는 총국가생산액과 맞먹는 반면 남미는 37%선에 그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 잠비아의 경우 국민 1인당 외채액수는 766달러로 이는 개인별 국민소득의 2배와 동일한 액수이다. 게다가 1989년 통계로 아프리카 전체 외채액수는 전체 수출액의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나이지리아와 코트디부와르의 경우 47%, 우간다의 경우 거의 2/3선에 달한다. 1980년 이후 단지 12개 아프리카 국가만이 부채상환능력을 인정받고 있다(Landau, 1990-91:31). 결국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채상환능력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아프리카 전체의 외채부담을 증가는 바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체 지구상의 교역량

5) 1974년 5월 1일 UN총회에서 채택된 “Résolution 3202(S-VI) Programme d'action concernant l'instauration d'un Nouvel Ordre Economique International”, in *Droit et relations internationales*, 1984, p.560.

6) 1974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채택된 “Résolution 3281(XXIX) Charte des droits et devoirs économiques des Etats”, *ibid.*, p.571.

7) *Le Monde*, 1993년 6월 30일자.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에서 기인한다. 즉 1970년에 7.6%에서 1985년에는 3.8%로 거의 반정도로 하락하고 있다. 참고로 남미제국은 15.6%로 안정적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은 6.6%에서 9.6%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Ibid:32).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국가를 보면 나이지리아, 코트디브와르, 자이레, 쌍토메프린시페, 이디오피아, 모리시어스, 수단 등으로 별로 많지 않다. 다음으로 주된 수출품목인 원자재가격의 하락도 주된 요인이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의 주된 수출품목에 의존하고 있으며, 더우기 한가지 품목에 여러 나라가 공통으로 의존하고 있다. 가령 커피가 코트디브와르와 케냐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4-6년도에 각각 60%와 31%로 나타나 있으며, 카카오가 가나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년도에 73%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격의 하락은 국가적 차원의 수입감소로 직결된다. 그리고 수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로 인한 득실을 따져볼 때 동일한 원자재를 수출하는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손해를 보리라는 추측이 강하다(Ibid:36). 따라서 외채상환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지역적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II. 아프리카의 기존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났던 국가간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은 수없이 많다. 이들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Ch.Rousseau교수가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아프리카에는 인위적이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아니한 것, 효율적인 기관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한 것, 심지어 참여한 정치인의 능력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것 등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상호간의 주요 움직임에 대해 살펴본다.⁹⁾

8) Charles Rousseau: *Droit international public, tome II*, pp.677-8.

9) 전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Emmanuel G.Bello: "Regional cooperation and organization: African States",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6, pp.301-308.

1. 개관

아프리카 각 지역별 경제통합 내지 협력 움직임은 크게 식민지시대와 탈식민지시대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되어질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를 굳이 분류한 이유는 아프리카단결기구(OAU: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가 그해 4월 라고스 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¹⁰⁾ 그리고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이 시점을 전후로 주요 경제통합움직임이 일어났다. 가령 1975년 서부 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980년 남부아프리카개발조정회의(SADC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 1981년의 동남부 아프리카특혜무역지대(PTA: Preferential Trading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1981년 경제-통화동맹을 목적으로 형성된 감비아와 세네갈 국가연합(Sene-gambian Confederation), 끝으로 1983년에 채택된 조약을 바탕으로 중앙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the Central African States) 등이다.

한편 아프리카의 지역경제통합움직임은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외에도 과거 식민지세력에 따라 불어권(서부 아프리카지역), 영어권(동부 아프리카지역), 그리고 포르투갈어권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준외에도 광활한 아프리카대륙을 지역별로 나누어 사하라사막 북부지역과 사하라사막 남부지역으로 우선 크게 나누고, 후자를 서부, 동부, 남부, 중부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도 있다. OAU 역시 공식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region)”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¹¹⁾ 이 논문도 지역별 분류방식을 따라 각 지역별로 주요 경제통합기구를 1) 개관 2) 명칭 및 설립조약, 3) 회원국, 4) 설립목적, 5) 주요기관, 6) 주요활동등의 순서로 살펴본다.

10) 라고스행동계획은 2000년까지 기존 지역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나의 아프리카 공동시장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공동체와 분야별 통합을 강화하며, 각종 정책의 조화 및 공동계획의 추진, 그리고 아프리카통화동맹결성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Robson, 1983:2; Hugon, 1991:39)

11) 1991년 6월 3일 채택된 OAU의 아프리카경제공동체 설립조약 제 1조 (d)를 보면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되어 있다. “‘지역’이라 함은 OAU 지역으로서 아프리카대륙 구분에 관한 OAU 각료이사회 결의안 CM/Res.464(XXVI)에 따라 북부, 서부, 중부, 동부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등 5개 지역을 말한다”, I.L.M., vol.30, 1991, p.1251.

2. 북부 아프리카 지역

1) 개관: 1964년에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와 리비아간에 경제분야 장관급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for Economic Affairs)가 구성되어 통계 및 관광등 한정된 분야에서 PCCM(Permanent Consultative Committee of Maghreb)이란 협력체를 구성하였으나 그 활동은 미미하였다(Robson, 1968:18). 그 후 1980년대 원유가격의 폭락(1979년 1배럴당 43달러에서 85-86년에는 5-10달러, 그리고 89년에는 약간 상승하여 15-18달러)으로 인한 알제리와 리비아의 경제적 타격과 원자재, 특히 인산염의 가격폭락으로 모로코와 모리타니아가 역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Balta & Rulleau, 1990:238). 그리하여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위 4개국과 모리타니아가 경제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공동대처방안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통합움직임을 아래와 같이 보이고 있다.

2) 명칭 및 설립현장: 북아프리카동맹 (UMA: l'Union du Maghreb Arabe, 영어로 AMU: Arab Maghreb Union)으로서 1989년 2월 17일 서명,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Marrakech 조약이다.¹²⁾

3) 회원국: 모로코, 모리타니아,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4) 설립목적: 경제통합과 재정(금융)조정을 통한 회원국간 공동구조를 형성하며,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경없는 북아프리카지대를 형성하는데 있다.

5) 주요기관: UMA는 정치적 결정기관, 집행기관 및 사법기관을 갖고있다. 우선 각 회원국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최고결정기관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이사회(Conseil de la Présidence)와 그 밑으로 외무장관회의(Conseil des ministres des affaires étrangères), 특별장관위원회(Commissions ministérielles spécialisées), 그리고 이사회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이 있다.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5개 분과 위원회가 1988년 6월 13-14일 설치되었다. 여기에는 재정 관세분야 위원회, 경제정책 분야 위원회, 교육, 문화 및 정보분야 위원회, 사회 및 공공문제분야 위원회, 그리고 기관 및 구조문제분야 위원회등이 있다(Blaid, 1991:131; Balta & Rulleau, 1990: 244-247) 이 외에도 각종 구체적 의견 및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자문위원회와 사법재판소가 있다. 재판소는 맡겨진 사안에 따라 강제력있는 최종 확정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을 낸다.

6) 최근활동상황: 1993년초 북아프리카동맹 회원국은 4개의 농업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물자원개발과 환경에 관련된 조약의 내용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

12) 이 조약의 요지는 이 논문의 부록 참조.

로 볼 때 북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기존의 양자간 관계에서 벗어나 다자간 조율 및 지역통합을 통한 장래 상호관계개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서부 아프리카 지역

1) 개관: 이 지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통합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다양한 지역적 경제기구들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간 경제협력이 일찍부터 발생하였으며, 그 후 영어권과의 제휴가 이루어졌다. 이하 몇몇 주요한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적 경제기구들을 살펴본다.

2) 서부 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¹³⁾

① 설립조약: 1975년 5월 25일 채택된 라고스조약(Treaty of Lagos)이며, 14장 65조로 구성되어 있다.¹⁴⁾

② 회원국: 현재 16개국으로 가나, 감비아, 기네비소, 기니, 가뽀베르데,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토고.

③ 설립목적: 설립헌장 제 2조 1항에서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회원국간의 유대강화, 아프리카대륙의 발전을 위해 공업, 운송, 통신, 에너지, 자원, 교역, 통화 및 금융문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과 상호간의 협력”을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서 역내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본 및 서비스의 이동의 자유화, 농업개발사업의 공동추진, 회원국간 경제정책의 협력 및 균형된 경제발전의 도모, 통화정책의 통일, 역내관세 및 수량규제의 철폐, 역외 공동관세 및 공동무역정책의 수립, 보상 및 발전기금의 조성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ECOWAS는 역내국가들의 긴밀한 협조하에 역내경제의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EC와 같은 역내공동시장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④ 주요기관: 우선 최고결정기관으로서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회의(Authority of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가 있다. 이 기관은 회원국의 정상들로 구성되며,

13) ECOWAS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Okolo, 1989:111-137; 박원탁, 정영태, 1991:29; 국회사무처입법조사국, 1992:224-28) 참조.

14) 조약문은 I.L.M., vol.14, 1975, no.5, pp.1200-1209 참조.

매년 5월에 정기회의를 가진다. 다음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가 있다. 이 기관은 각 회원국에서 2명씩 선임된 총 32명으로 구성되며, 년 2회의 정기총회를 연다. 주요 임무로는 효율적 정책수립과 기구의 활동을 위해 평가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세 번째 기관으로서 사무국(Executive secretariat)을 들 수 있다. 이 기관은 정상회의에서 임명하는 1명의 사무총장과 각료회의에서 임명하는 2명의 부사무총장 및 사무관으로 구성되어 관련업무에 관한 보고서를 각료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 끝으로 회원국간 분쟁발생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재기구로서의 공동체재판소(Tribunal of Community)가 있다. 아울러 이외에도 4개의 전문위원회(Technical and Specialized Commissions)가 설치되어있는 바, 무역, 관세, 이민, 금융 및 지불위원회; 공업, 농업 및 천연자원위원회; 교통, 통신 및 에너지위원회; 사회 및 문화위원회이다. 한편 설립조약 제 11장에 명시되어 있는 ECOWAS기금(Fund for Cooperation, Compensation and Development)은 빈곤한 회원국의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회원국의 기업설립이나 무역자유화로 인한 손실보상,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증, 역내 예금 및 대출을 위한 중앙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한다(Okolo, 1989:122-23).

⑤ 최근 활동상황: 역내무역자유화를 조약발효후 15년의 잠정기간을 통하여 1977년, 1985년 그리고 1990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990년 1월부터 국내 무관세통관을 전제로 하는 역내무역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교역시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것으로 현재 나이지리아를 비롯 베냉, 가나, 니제르등 7개국만이 25개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적용하고 있다.¹⁵⁾ 이외에도 공산품교역 자유화 모색, 단일통화지역형성, 경제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기금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는 단일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⑥ 평가 및 문제점: 지금까지의 활동을 놓고 볼 때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현상이 ECOWAS내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역내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으로서 'ECOWAS Travel Certificate'라고 불리는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통화협력계획의 추진이다. 이는 이 지역의 통화부문의 협력을 위해 설치된 기존의 West African Clearing House(WACH)가 West African Monetary Agency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 및 통화통합 및 지불등의 부분에서 더욱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회원국내 상수도의 확충, 해상수송의 확대 및 통신망의 확대등의 추진을 들 수 있다.¹⁶⁾

이처럼 ECOWAS는 관련 지역의 산업화를 최대목표로 설정하는 경제적 기구로서 아

15) 대한무역진흥공사, 1990, p.86, pp.130-131, 특히 131면 25개 품목 열거되어있음.

16) *Africa Research Bulletin*, vol.30, 1993, no.7, pp.11339-41.

프리카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중에서도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외도 정치적 연합과 1981년에 채택된 상호방위원조의정서(Protocol on Mutual Assistance on Defence)를 바탕으로 한 군사방위기구의 색채도 역시 일부 띄고있다(Ajulo, 1989: 233-250, 특히 pp.236-239). 그러면 ECOWAS는 마치 유럽공동체처럼 초국가적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서는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ECOWAS가 안고 있는 문제로서는 역내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간 또는 공업화-비공업화국간에 이해의 충돌, 영어권 대 불어권 국가간의 마찰, 역내교역촉진 및 확대에 필수불가결한 하부구조의 미비 및 회원국간 수출구조상의 유사성등으로 인하여 추진실적의 부진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서부 아프리카는 1991년 통계로 아프리카 전체 외채의 45%인 783억 달러를 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립헌장 제 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역내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권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1979년 5월에 채택된 의정서(Protocol on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and Rights of Residence)에도 불구하고 1983년 1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자국 영토에 있던 주변 아프리카인들을 대규모 추방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던 사실은 역내에 불안정한 요소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Gravil, 1985:532-537; Brown, 1989:251-273).

2)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AO)¹⁷⁾

① 설립조약: 1973년 4월 아비잔(Abidjan, 코트디부와르)에서 채택된 조약

② 회원국: 7개국으로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부와르.

③ 설립목적 및 추진현황: 서부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역내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경제협력기구로서 교역부분에서는 비공산품 역내관세철폐, 비공산품교역 특혜대우로 교역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공업개발사업 및 경제통합계획을 추진중이며 거주이전의 자유보장, 경제개발등에 관한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외공동관세는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3) 서부아프리카 통화동맹(UMOA, Union monétaire ouest-africaine)

① 설립조약: 1962년 5월 체결되어 동년 11월 1일부터 효력발생된 파리조약

② 회원국: 니제르, 말리(말리는 1962년에 독자적 국내통화를 고집하여 탈퇴하였다

17) CEAO는 Communauté économique de l'Afrique de l'ouest(영어로는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의 약자이다.

가 80년대 중반에 재가입함), 모리타니아, 베냉,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코트디브와르.

③ 설립목적 및 체제: 프랑스와 회원국간 프랑화를 매개로 하여 붙어권 서부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연관성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간에는 아프리카재정공동체 통화(CFA franc, la Communauté financière africaine)이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서부아프리카제국 중앙은행(BCEAO, Banque centrale des Etats de l'Afrique de l'Ouest)가 회원국간 공동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다. 후자에는 1963년 토고가 가입하고 있다(Crum, 1984:469-486).

4) 서부아프리카 관세동맹(West African Customs Union)

1966년 6월에 채택되고 동년 12월에 발효된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1959년 다호메이(현재 베냉), 코트디브와르,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르, 세네갈과 상부볼타(현재 부르키나파소)간에 형성되었던 관세동맹을 대체하였다.¹⁸⁾ 1959년에 형성된 동맹의 목적은 독립이전에 존재했었던 관세를 계속 이어가자는데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회원국간 무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폐지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59년 조약은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1966년 조약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해서는 공동관세를 설정하고, 내부교역에 대해서는 외부공동관세의 50%선에서 책정하되, 기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70%까지 인상가능토록 하였다. 하지만 회원국 상호간 자유로운 물품이동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의문이다.¹⁹⁾

5) 서부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전반적 평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부 아프리카지역은 경제통합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수많은 경제협력기구들이 병존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지역에 기존의 통합움직임과 새로운 통합움직임이 중복되어 있는 현상, 특히 ECOWAS와 CEAO의 양립을 두고 학자들의 평가가 다르다.²⁰⁾ 아울러 서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호간 또는 역외 국가들과 양자-다자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들의 복잡한 관계의 상호절충 역시 앞으로의 통합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령 감비아, 가나,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은 영연방의 회원국이며, 붙어권 국가들은 서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AO), 서부아프리카 통화동맹(UMOA), 세네갈강 개발기구(OMVS)등에 가입하고

18) 1959년 관세동맹에 관해서는(Robson, 1968:16-17) 참조.

19) Bahram Nowzad,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nd West Africa", *op cit.*, p.212.

20) 긍정적 시각으로는 John P. Renninger, 1979:94. 부정적 시각으로는 박원탁, 정영태, 앞의 논문:54-55.

있다. 그리고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은 마노강동맹(Mano River Union)에 속해 있으며, 끝으로 모리타니아는 새로운 북아프리카동맹의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4. 중부 아프리카 지역

1) 중부아프리카 관세경제동맹 (UDEAC)²¹⁾

① 설립조약 및 역사: UDEAC는 콩고의 브라자빌에서 1964년에 채택되어 1966년부터 효력을 발생한 협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데 UDEAC의 출발점은 1959년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브라자빌)와 가봉이 형성한 적도관세동맹(UDE: Union douanière equatoriale, 영어로는 Equatorial Customs Union)이다. 이 네 국가는 본래 프랑스령 적도아프리카연합(Federation of French Equatorial Africa)을 이루고 있었고, 그들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였다.²²⁾ 한편 UDE에 1961년에는 카메룬이 가입을 하였고, 마침내 1966년 1월부터 UDEAC로 확대개편되었다.

② 회원국: 1993년 현재 6개국으로 카메룬, 콩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가봉, 차드, 적도기네이다.

③ 설립목적: 회원국간 경제협력과 무역증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지역경제통합체로서 중부 아프리카 공동시장을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 정책으로써 관세동맹, 주요공업계획사업의 추진, 투자정책을 위한 공동법전 제정, 공동조세체제의 정비, 공동단결기금의 조성 및 역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④ 활동: UDEAC는 UDE가 추구해왔던 기존의 정책에 덧붙여서 수입세 및 관세품목의 통일, UDEAC구역내에 공동관세사무소의 설치, 투자코드의 통일, 내국세 및 국내발전계획의 조화를 꾀하였다. 회원국 상호간에 특별한 자유무역정책과 단일관세를 적용해 오고 있으며, 역내간에는 상호주의에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입과징금을 통일시키고 있다.²³⁾ 아울러 중앙아프리카제국은행(BEAC: Banque des Etats de l'

21) UDEAC는 Union douanière et économique de l'Afrique centrale(영어로는 Central African Customs and Economic Union)의 약자이다.

22) UDE는 회원국간 상품과 자본의 자유이동, 재정-투자정책의 조율, 단일세 도입, 연대기금의 조성등을 계획하였다. Bahram Nowzad,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nd West Africa", *op cit.*, p.210.

23) 1993년 중반 회원국간 관세부과율이 통일적으로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생필품 5%, 비가공품과 설비품 15%, 중간물품 30%, 소비재 50%(5년내에 35%로 낮춤, *Africa Research Bulletin*, vol.30, 1993, no.7, p.11341).

Afrique Centrale)이 1960년대 초반부터 설립되어 역내 공동발전이나 경제발전이 뒤진 회원국에 대한 재정적 원조를 하고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0:33). 그러나 UDEAC는 1968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차드가 탈퇴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큰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었다.²⁴⁾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협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이익배분에 대한 강력한 불만에 기인한다. 이 두 국가는 모두 해안선이 없는 내륙국으로서 대규모 공장이 해안국가에 세워지는데 대해 불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일세제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⁵⁾

⑤ 문제점: 운송, 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와 각 회원국의 관세율 조정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교역증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내 경제발전계획이 콩고, 가봉, 카메룬에만 집중되어 있어 내륙국인 중앙아프리카와 차드의 반발을 샀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과 경제협력으로 얻어지는 이익과 혜택의 균형적 배분이 관건으로 등장한다.

2) 중앙아프리카국가동맹(Union of Central African States)

1968년 2월 Bangui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차드, 콩고가 중앙아프리카국가동맹을 형성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점진적인 공동시장형성, 산업계획의 회원국간 형평스런 배분, 내륙국의 이익보존 및 발전, 그리고 투자은행등을 명기하고 있다. 이 기구의 출범은 앞에서 설명한 UDEAC를 탈퇴한 내륙국들의 참여 및 그들의 불만이 거의 수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UDEAC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 내면이 깔려있다고 보아진다. 하지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UDEAC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이 기구의 존속은 불투명하다.

3) 중앙아프리카 경제공동체(CEEAC: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s)

이 기구는 1983년 조약으로 창설되어 1993년 1월 현재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가봉, 적도기네, 루완다, 쌍도메프린시페(Sao Tome and Principe), 차드, 자이레 등이 참여하여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4) 이들 선언은 196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그후 계속 UDEAC에 잔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차드 역시 1983년에 복귀하였다.

25) Bahram Nowzad, *op cit.*, p.211.

5. 동부 아프리카 지역

1)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East African Community)²⁶⁾

1967년 6월 케냐, 우간다와 탄자니아간에 체결된 동부아프리카 협력조약(Treaty for East African Cooperation)으로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역내무역의 관세면제, 대외공동관세의 설정, 공동통화, 소비세 및 소득세의 통일, 철도, 우편, 전신전화, 항만행정 및 항공운송의 공동운영, 자본 및 노동이동의 자유, 조사통계자료의 통일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시장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역내통합으로 인한 이익배분의 불균형에 대한 회원국간의 불화, 기구조직의 허술함 및 회원국의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성된 지 10년만인 1977년 해체되었다. 이후 이 공동체에 관여했던 세 국가 모두 아래에 설명하는 PTA에 가입하고 있다.

2) 동남부 아프리카 특혜무역지대(PTA: 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

① 설립조약: 1981년 12월 잠비아 루사카에서 동남부 아프리카 특혜무역지대협정이 채택되고 1984년 7월 발효되었다. 이 움직임은 그후 1993년 6월 우간다의 캄팔라(Kampala)에서 2000년대 동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을 형성하는 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확대되었다. COMESA가 창설되면 아프리카 대륙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2억 7천만명의 주민과 연간 2천 5백억달러의 GNP를 산출하는 광역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COMESA조약에는 총 22개 국가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15개국만 서명하였다. 즉 동남부 아프리카 특혜무역지대(PTA)의 회원국이 아닌 에리트레아, 세이셸 군도, 마다가스카르 등 3개국이 새로이 합류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²⁷⁾ 그런데 COMESA와 SADCC간의 관계정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② 회원국: PTA에는 1993년 현재 총 19개국만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국의 총인구는 약 2억 6천만명으로 아프리카 제 1의 무역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앙골라, 루완다, 부룬디,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스와질랜드, 모잠비크, 레소토, 코모로, 모리시어스(Mauritius), 수단, 지부티, 나미비아 등

26) Norbert Wuhler: "East African Community",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vol.6, pp.105-107.

27) *Africa Research Bulletin*, vol.30, 1993, no.10, p.11449.

이다.

③ 설립목적: 역내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시킴으로써 상호교역촉진과 경제개발을 도모함과 동시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선진국가에 대한 경제의존탈피와 역내경제의 자립화 실현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④ 주요기구: 최고기관인 정상회의, 집행기관인 각료이사회 및 사무국, 6개 기술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⑤ 최근활동: PTA의 역사는 다른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에 비해 짧으나 공동목표달성을 위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역내 관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내교역자유화의 추진을 통해 유럽공동체와 같은 공동시장의 실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내 회원국간의 양자협력관계 개선, 수송망 확보, 인적자원개발등을 구체적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박영탁·정영태, 1991:5-69). PTA는 회원국간의 경제력 상이, 교역품목의 빈곤 및 회원국간의 이해대립등으로 인하여 특혜관세제도의 실시, PTA 여행자수표의 사용등 많은 분야에서 난항을 계속하여 당초 숙원인 역내공동시장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꾸준히 역내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철강, 비료의 공동생산계획을 세계은행의 자금지원하에 추진중에 있으며, 1989년 회의에서는 공동금속연구소의 설치 등을 결의한 점과 세계적인 지역경제블록화 추세에 비추어 PTA 역내국가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역내관세율인하에 관해서는 1984년 자국민지분율에 따라 차등과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PTA는 Common List (6개 그룹, 395개 품목)에 대해 10%에서 70%까지의 양허관세율 및 자국민지분율에 따라 0%에서 100%까지의 관세특혜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0:200-210). 아울러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의 탈피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지인 출자기업을 우대하고 외국인기업 또는 외국상품에 대해서는 차별대우정책을 펴고있다. 현재 PTA를 공동시장형태로 바꾸는 문제와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와의 통합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만일 PTA의 공동시장으로의 전환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GDP 8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²⁸⁾

28) *Africa Research Bulletin*, vol.30, 1993, no.1, p.11120.

6. 남부 아프리카 지역

1) 개관: 20세기초부터 식민경영세력의 주도로 경제협력의 초기적 형태가 형성되었다. 19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Basutoland, Swaziland, Bechuanaland의 3개 High Commission Territories간에 사실상의 관세동맹과 통화동맹이 존재했었고(Peter Robson, 1968:18-19), 이후 1950년대 이후 로데지아(현재 짐바브웨)가 역시 위 국가들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항하는 경제협력체의 형태인 SADCC가 나타났으나 정치적 조류의 변화로 이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는 포괄적 움직임 모색으로 나아가고 있다.

2) 남부 아프리카 개발협력회의(SADC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²⁹⁾

① 설립조약: 1980년 4월 잠비아의 루사카(Lusaka)선언이 9개국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 기구는 현재 그 명칭에 있어서나 구조상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구의 명칭은 현재 남부 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로 바뀌었다.

② 회원국: 1993년 현재 남부아프리카 10개국으로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나미비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이다. 참고로 탄자니아의 경우 지리학상 남부 아프리카 지역을 구분할 때 서쪽으로는 앙골라, 동쪽으로는 모잠비크를 경계지역으로 그 이남 국가를 지칭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동부 아프리카에 속하지만 남아프리카 개발협력회의(SADCC)에 참여하고 있다.

③ 설립목적: 루사카선언을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경제의존 탈피, 역내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실질적 지역통합완성, 각종 지역개발계획추진, 역내 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확보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④ 주요활동: 1989년까지 SADCC는 63억 달러상당의 490개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이의 대부분이 외국원조의 지원으로 공동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륙국과 항구를 잇는 철도, 항만시설의 보수확장사업의 추진과 도로, 공항, 전기통신

29)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Michael Clough & John Ravenhill: "Regional Cooperation in Southern Africa: the SADCC", in Clough (ed), *Changing Realities in Southern Africa*, 1982, pp.161-186.; 김기환, "남부아프리카 지역통합의 전개양상과 한계 요인에 관한 연구: SADCC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71p.; 국회사무처: "세계경제의 지역적 통합현상과 ...", 전게서, pp.228-234 참조.

망사업의 추진, 기초식량자금 계획추진, 공업화계획의 추진 및 석유, 석탄, 수력발전등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을 들 수 있다. 1990년에 나미비아가 독립후 가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며, 특히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존경향을 축소시키기 위해 각 회원국은 역내경제발전을 위한 특정사업을 역내 국가간에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³⁰⁾ 그런데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기존의 자국내 인종차별정책을 철폐함에 따라 각종 경제제재조치가 해제됨으로써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근국들간의 경제관계재개, 이념붕괴로 인한 각국의 자국경제개발확대, 남부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특히 남아공이 SADCC에 가입할 가능성의 증가)등으로 남부 아프리카국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급속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2:11; OECD, 1991:25).

⑤ 주요기구: 우선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된 최고결정기관으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며 1년에 최소한 1회 모이는 '정상회의', 그리고 회원국에서 선임된 대표로 구성되며 각국의 활동사항에 대해 정상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1년에 최소한 2회이상 모이며 만장일치제로서 운영되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그리고 SADCC의 재산을 관리하고 일반활동의 조정 및 각료회의에 활동사항을 보고하는 '사무국'(Secretariat)등이다.

⑥ 문제점: SADCC는 회원국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의 경제종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였다. 다행히 후자가 최근 인종차별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흑인정권이 들어섬으로써 보다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되었다. 하지만 회원국의 경제구조상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는 풍부한 자원보유국으로 제조업과 수출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으나, 나머지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자급자족부분인 단순농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치유할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국회사무처, 199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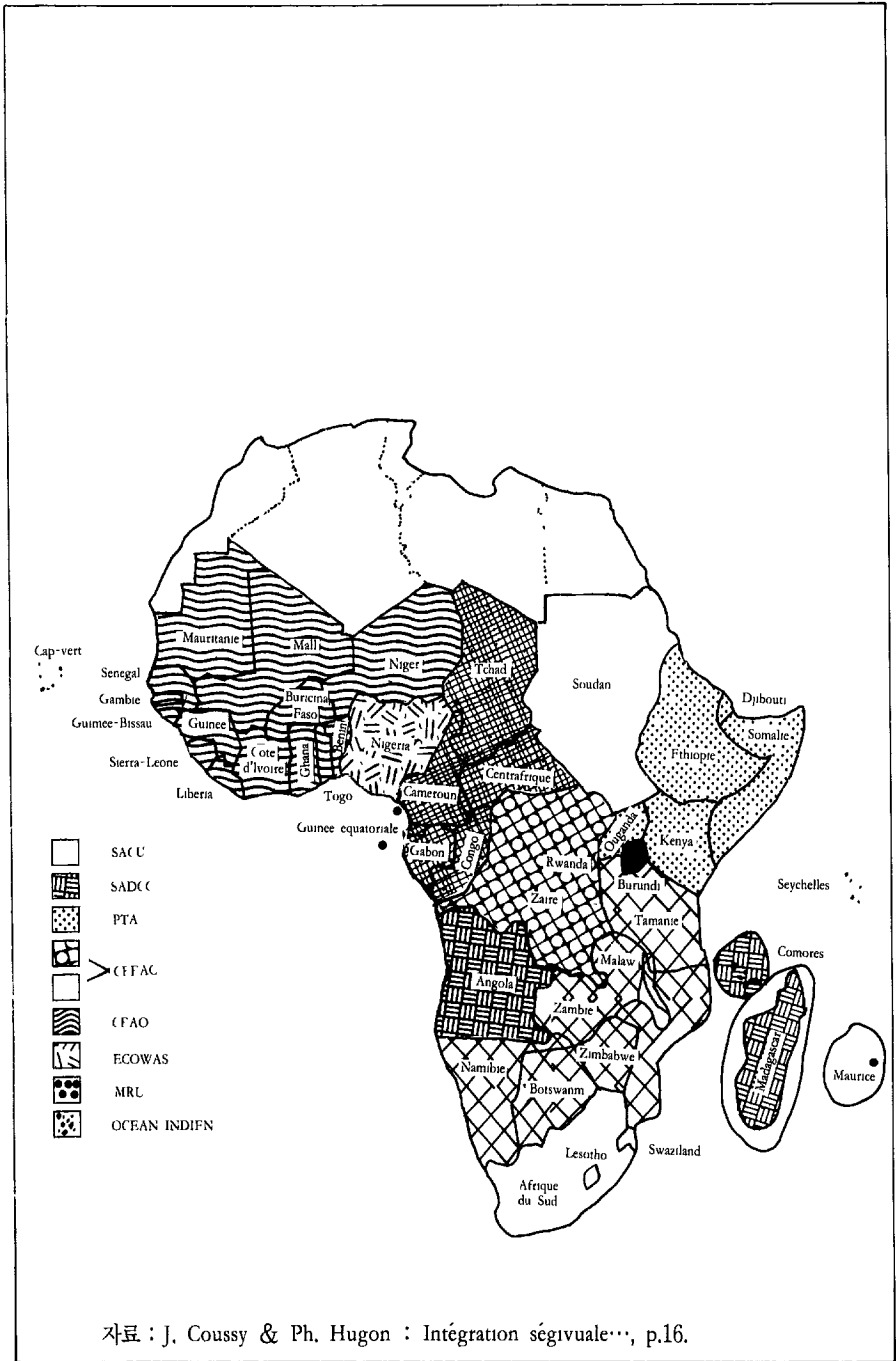
2) 남부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South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간 거래는 역내 거래로 간주하여 물품교역이 자유로우며, 회원국 역내관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관세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보츠와나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 다이아몬드 수

3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앙골라: 역내에너지 계획, 보츠와나: 질병예방 및 방역계획과 곡물생산계획, 스와질랜드: 인력개발 및 훈련계획, 탄자니아: 역내 상호 경제개발전략 조정 계획, 잠비아: 남부아프리카 개발기금 계획, 짐바브웨: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식량기금설립, 모잠비크: 남부아프리카 운송, 통신위원회의 창설, 말라위: 수산물 및 야생동물의 보호계획등이다.

<표 1>

1990年 아프리카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 도표



자료 : J. Coussy & Ph. Hugon : Intégration ségriuale..., p.16.

출증가와 이 관세동맹 참여로 인한 높은 세수입으로 흑자상태를 유지해 왔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2:77).

7 평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프리카대륙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다. 참고로 앞장의 <표 1>은 1990년까지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래 <표 2>는 주요 경제통합움직임의 몇몇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대한무역진흥공사, 1992:11).

<표 2> 각 경제권별 주요 경제규모 비교 (91년 추정치)

주요지표 경제권	GDP (US \$억)	실질경제 성장률(%)	인구 (백만)	수출 수입		외채 (US \$백만)
				총(US \$백만)		
ECOWAS(16개국)	742.7	1.7	210	20,986	17,022	79,782
PTA(17개국)	482.2	2.3	196	11,097	15,300	37,328
UDEAC(6개국)	410.4	1.0	185	10,472	6,802	36,036
SADCC(10개국)	290.4	3.5	183	10,951	12,698	32,674

우선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아프리카 대륙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역사는 유럽 제국의 아프리카 식민지경영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할 만큼 상당히 오래된 현상이다.³¹⁾ 하지만 탈식민지 이후 그러한 움직임은 소멸, 해체되거나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단순한 역사적 흥미거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탈식민지 이후 본격적인 자생적 움직임에 대해 몇 가지 특색을 지적한다.

1) 균등적 체제(egalitarian system)에서 비균등적 체제로의 전환추세

1960년대와 70년대의 초기 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움직임은 관련 국가간에 위계질서가 없는 균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체제로 시작하였다. 즉 초기에는 어떠한 아프리카 국가도 그가 속해있는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는 몇몇 강대국이 주도하고 있는 남미나 구 소련중심

31) J.F.A.Ajayi: "Historical factors in regional integration population movement and exchange in pre-colonial Africa", in Workshop "Regional Integration in Sub-Saharan Africa", 1988, World Bank, 재인용: Ph.Hugon: "L'Intégration régionale africaine", *op cit.*, p.20.

의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B.Boutros-Ghali, 1976:63).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배경으로는 다음 여러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우선 소규모의 인구수이다. 아프리카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소수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 논문의 머릿부분에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펼 수가 없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헤게모니 주도권경쟁, 즉 중동지역에는 이집트-이라크-사우디 아라비아, 중남미에는 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등과 같은 경쟁유형은 아프리카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간에도 온건그룹(브라자빌 그룹)과 급진그룹(카사블랑카그룹)의 대립이 있었다(박원탁, 정영태, 1991:32). 그러나 이들 그룹에 속한 나라들 역시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경쟁상대라고 볼 수는 없었다. 어쨌든 초기의 평등주의는 아프리카에 여러 다양한 하부 지역적인 통합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토양을 제공하여 주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초기단계를 지나서 점차 현실적으로 상대적인 우월 요소를 갖고 있는 몇몇 나라가 각 지역경제블록의 중심국 내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부상하였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가 그 좋은 예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넓은 영토,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남부 아프리카의 경제시장에 사실상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³²⁾ 이미 언급한대로 SADCC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등은 사실상 그의 경제권하에 속해있다. 다음으로 서부 아프리카지역의 나이지리아는 석유 생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부 아프리카지역의 16개국에 참여하고 있는 ECOWAS의 주도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³³⁾ 이들 국가 외에도 코트디부아르는 CEAO에서, 카메룬은 UDEAC에서 각각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케냐 역시 PTA의 주도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알제리와 모로코가 실세를 다투고 있다.

32)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토면적은 120만 Km², 인구는 3700만명이며, 국민총생산액은 800억불이다. 아울러 군사적 강대국이다.

33) 나이지리아는 인구 1억2천만명의 산유국으로 아프리카국가중 인구, 자본 동원능력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나이지리아는 주변 작은 나라인 감비아, 적도기네와 비교해서 면적상 91배, 인구상 192배에 이르며, 국가총생산면에서는 니제르의 24배에 달한다.

2) 경제통합의 객관적 실적 미흡

탈식민지이후 아프리카 신생국들간에 형성된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은 역내 교역의 증진을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에 그 주된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통합결과의 평가는 실망스럽다. 우선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 즉 상품과 자본의 이동면에서 2/3이상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세계와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들의 수출품목을 다양화 내지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60년대나 90년대나 마찬가지로 1차 생산품이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공산품은 5%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다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Hugon, 1993:58). 그리고 외채는 80년과 90년 사이에 무려 3배로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아프리카 국가상호간 교역량은 계속 후퇴하는 추세이다. UNCTAD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5-65년 사이에 약 9%였던 것이 1975-85년에는 6%로 하락하였다. 이상과 같은 통계수치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본유입측면에서는 동구권에, 수출측면에서 볼 때는 아시아와 남미국가들에게 뒤처지거나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Hugon, 1993:61). 이렇게 된 이유로는 우선 구조적인 이유를 들 수 있다. 즉 운송의 어려움, 각 회원국 일인당 국민소득의 저하, 회원국 경제의 소규모등이다. 다음으로 경제정책수행의 불통일이다. 가령 행정규칙의 복잡성, 표준화의 부재, 다양한 통화의 존재로 인한 호환성의 어려움 등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그만큼 지금까지의 목표로 삼았던 실질적인 경제통합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3) 동일 지역에 복수 경제통합움직임의 병존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지역별내지는 공통요소에 따라 많은 경제통합움직임이 부침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지역내에 경쟁적 성격을 띤 움직임이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끔 만든다. 가령 서부지역의 ECOWAS와 CEAO, 동남부지역의 PTA와 SADCC가 그 좋은 예이다. 특히 서부 아프리카지역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이 가장 많이 시도된 지역이다. 가령 1952년 세네갈강개발기구(OMVS: Organisation pour la Mise en Valeur du Fleuve Sénégal)을 시초로 현재까지 약 42개의 협력기구가 창설되었거나 시도되었다. 하지만 그중에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극히 적다(Igue, 1994:70-71).

그러면 전체 아프리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정치적 기구인 아프리카단결기구(OAU)는 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 중 어느 하나를 해체시키거나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새로운 경제통합움직임의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첫째, 각 지역적 경제통합움직

임은 그 지역에 맞는 조건들 (가령 공통의 식민지문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여건등) 을 바탕으로 생성되었고, 둘째, 아프리카 각국은 자국의 주권이전 또는 제약을 기피하여 그들이 속해있는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구조를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이 초국가적인 기구의 개입을 환영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간에는 상호 유기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따로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치적 개입으로 간주되기 쉽다. 넷째, 각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에는 현실적으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한 통제합은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각각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은 그 하나하나가 마치 하나의 유럽 또는 하나의 남미를 이루며, 이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의 아프리카의 경제통합움직임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다(Boutros-Ghali, 1976:64-65). 따라서 이러한 요소는 바로 이어서 살펴볼 아프리카의 새로운 경제협력움직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다.

Ⅲ. 아프리카의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의 모색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 (African Economic Community)의 설립계획이다. 1991년 6월 나이지리아의 아부자(Abuja)에서 열렸던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정상회담에서 51개 아프리카 정상들은 OAU의 일부분을 구성하게 될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 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African Economic Community)에 서명하였다. 총 22장 106조로 구성된 방대한 문서는 모두 6단계로 나누어 34년간에 걸쳐 완성될 아프리카 전체 경제공동체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³⁴⁾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주요 배경으로는 우선 1980년에 채택된 Lagos Plan of Action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필요성 인식과 동시에 아프리카 국가상호간의 교역량이 아프리카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장래에 활동하게 될 새로운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 연구자가 보는 세 가지 특색과 주요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34) 조약 전문은 I.L.M., vol.30, 1991, pp.1241-1281.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 논문의 부록 참조.

1.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집단적 자립개념(continental scale development)의 채택

지금까지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과는 달리 AEC는 하나의 경제공동체 및 하나의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해 설립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존재해오던 기구들은 모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 이익을 추구해왔던 반면, 새로 탄생하게 될 AEC는 전체적 구도하에 개별적 이익추구를 적절히 행하게 된다. AEC의 목적은 제 4조 1항에 다음 네 가지로 명시되어 있는 바,

첫째, 경제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과 아프리카 경제통합을 증진시키고 내성적이며 자립적인 발전을 증진시킨다.

둘째, 자립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 동원 및 사용 체제를 대륙 전체 규모로 설립한다.

셋째, 아프리카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분야에 있어 협력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회원국간의 평화적 관계를 더욱 결속시키며,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통합에 공헌한다.

넷째, 공동체의 점진적인 형성을 위하여 기존 및 미래의 경제공동체간 정책을 조화하고 조정한다.

이를 위하여 제 4조 2항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즉 기존의 지역경제공동체를 강화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없는 곳에는 설립하며, 이러한 경제공동체간의 정책을 조화하고 조정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하며, 집단적 자립의 구도속에서 생산의 합작투자계획, 주요생산품의 무역을 증진하고 이 지역내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의 폐지, 관세의 철폐를 추진하며, 농업, 공업, 교통, 통신, 에너지, 천연자원, 화폐금융, 교육,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조화를 도모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단일관세제도를 설정하며, 제3국에 대해 공동무역정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사람, 상품,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에 대한 장애요소를 회원국간에 점진적으로 해소하며, 이에 필요한 공동체기금을 형성한다. 그리고 회원국중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외부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끝으로 공동의 환경보호정책 모색도 추구한다.

2. 현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점진적 발전전략의 채택

AEC는 기존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급진적으로 통합의 방향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이고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리고 최종 단계에 가서는 AEC를 모든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별 경제통합기구들을 통괄하는 최고의 기구로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조약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현존하는 경제통합움직임을 인정하는 부분으로서, 조약 서문의 “이미 있어왔던 각 지역별 및 부문별 경제협력은 고무되어져야 하며 아울러 보다 폭넓고 충분한 경제통합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제 28조(지역경제공동체의 강화)의 “1항: 첫번째 단계에서 회원국들은 기존의 지역경제공동체를 강화하고 그러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역에는 AEC의 점진적 형성을 돕기위해 새로이 설립한다. 2항: AEC의 목적달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지역경제공동체들 활동의 조율과 조화를 통하여 회원국들은 지역경제공동체 상호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 88조(AEC와 기존 지역경제공동체와의 관계)에는 “1항: AEC는 지역경제공동체들의 활동의 조화와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서 형성가능하다. 2항: 회원국은 그들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지역경제공동체의 활동과 AEC 활동을 조화시키고 점진적인 통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지역경제공동체 활동강화의 목적은 결국 장래 있을 AEC의 형성과 활동범위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진다.

다음 AEC에게 기존의 지역별 경제통합기구의 상위에 위치하여 이들 활동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조약 제 10조 2항과 제 13조 2항에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가 채택한 결정과 각료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은 비단 회원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에 까지도 그 강제적 효력을 미친다”는 규정과 제 88조 2항 단서인 “회원국들은 AEC 설립이 현존하거나 장래에 만들어질 지역경제공동체 활동이 추구할 최종 목표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등이다. 특히 제 88조 3항의 “AEC는 현존하거나 장래 만들어질 지역경제공동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며 아울러 평가할 것을 위탁받고 있다”라는 규정과 제 93조 2항 “이 조약이 발효하기 이전에 회원국이 기존의 지역경제공동체와 체결한 조약의 내용이 이 조약과 배치될 경우 회원국은 상반되는 내용을 제거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은 명백하게 AEC의 법적 지위, 즉 기존 경제통합움직임에 대한 상위조직으로서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움직임들은 모두다 어떠한 형태로든 AEC에 재통합되어 그 범주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의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추진은 아프리카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지여하에 달려있다.

3. 구체적 단계별 추진계획의 수립

1990년 조약 제 6조는 공동체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즉 AEC 형성을

6단계로 나누어 34년이 넘지 아니하는 과도기동안 다음과 같이 진행시킨다.

제 1단계(5년): 조약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5년이 넘지 않는 기간동안 기존의 지역 경제공동체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이러한 공동체가 없는 지역에는 새로 설립한다.

제 2단계(8년): 제 1단계 이후의 기간으로 각 지역경제공동체 수준에서 취하는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즉 이 조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안정시키고, 각 지역경제공동체 상호간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계획표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아울러 무역, 농업, 통화, 재정, 운송과 통신, 산업 및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과 대륙차원에서 분야별 통합을 강화시킨다.

제 3단계(10년): 제 2단계 이후의 기간으로 역시 각 경제공동체의 수준에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주된 목표는 공동체 상호간의 교역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 위한 계획표에 따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설치함과 동시에 대외적 단일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설치하는데 있다.

제 4단계(2년): 제 3단계 이후의 기간으로 여러 지역경제공동체간에 실시되던 관세, 비관세 장벽을 대륙차원의 관세동맹을 설립하기 위해 조화를 추구한다.

제 5단계(4년): 제 4단계 이후의 기간으로 아프리카 경제공동시장을 설립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농업, 운송과 통신, 산업, 에너지와 과학연구와 같은 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채택한다. 둘째, 통화, 재정 및 조세정책을 조화시킨다. 세째, 사람의 자유 이동 및 거주와 권리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네째, 공동체 자체의 재원을 확보한다.

제 6단계(5년): 제 5단계 이후의 마지막 기간으로 모든 부문, 즉 사람, 상품, 자본,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아프리카 공동시장의 구조를 공고히 하고 강화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중앙은행(African Central Bank)의 설립, 단일 아프리카 화폐단위 실시, 아프리카 통화동맹(African Monetary Union)의 실현 및 최초의 범아프리카 의회 선거를 실시한다.

이러한 구체적이고도 단계적인 계획표는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활동의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하여 주는 효과를 갖는다.

4. 주요 기관과 그의 특색

AEC는 기존의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들이 갖고있던 구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최고정책결정기관인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Assembl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과 실제적으로 공동체의 기능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며, 여러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 통합의 마지막 6번째 단계에서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범아프리카의회(Pan African parliament)’,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조약의 적용과 해석상의 분쟁과 그의 조약에 의거하여 부탁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와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특별기술분과위원회(specialized technical committees)’ 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기존의 통합움직임내부의 기관에 비교해 볼 때 AEC 기관의 결정채택방식의 완화와 그 법적 효과의 강화이다. 우선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의 결정은 총의(consensus)를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회원국 전체 2/3 찬성으로 하고 있다.(조약 제 10조 4항) 아울러 이사회는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의 승인하에 강제력있는 규칙(regulation)을 채택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 역시 총의 또는 2/3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이는 기존의 아프리카 지역적 경제통합기구들이 일률적으로 채택하던 만장일치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발전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채택된 결정과 규칙의 효력 역시 상당히 강화된다. ‘국가 및 정부수반의회’에서 채택한 결정은 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회원국과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다.(조약 제 10조 3항) 그리고 이사회가 채택하는 규칙 역시 그의 효력은 비단 회원국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공동체에까지 미치도록 되어있다.(조약 13조)

IV. 총괄적 평가 및 결론

개발도상국들이 지리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결성한 지역적 통합움직임은 수없이 많지만 무역자유화의 여건미비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는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³⁵⁾ 아프리카지역 역시 이러한 개도국의 경제통합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경제통합운동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경제통합체의 소멸과 새로운 통합체로의 재결합 움직임만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Robson, 1983:2).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35) 임진대, 1993:125; Michel Virally “Les relations entre organisations régionales et organisations universelles”, in *Régionalisme et universalisme dans le droit international contemporain*, 1976, pp.147-165. 한편 지리적 인접성이 과연 지역적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1. 경제통합움직임의 부진한 이유

1) 통합전략의 부적절성: 이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다. 가령 아프리카 대륙에 특이한 요소들, 즉 높은 인구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망율, 고급인력의 부족, 아프리카 정치인사이의 이념적 차이 및 개인적 혐오감의 팽배 등을 들 수도 있다.³⁶⁾ 하지만 가장 설득력있는 설명은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시도가 애초 너무 좁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넓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라고 본다. 즉 첫번째의 경우 통합과정은 통합작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할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이 갖는 유용성을 상실케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통합과정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국내경제가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경제적 범주에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충분한 여유를 주지 못하고 따라서 실패로 돌아간다(Belaid, 1991:132). 실제로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모델을 고도로 발전된 유럽공동체에서 그대로 따올 수도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경제통합의 기초가 되는 하부구조의 존재가 아프리카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Ngom-Ngoudi, 1971:120). 더우기 아프리카의 독특한 역사-사회구조인 '부족'이라는 자연적 연대감을 무시한 채 인위적인 지역적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적절하다고 보여진다(Igue, 1994:75).

2) 회원국 개별 경제체제의 고립성과 정체성: 통합작업의 부진한 두번째 이유로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가 상이하고 또 각국간 대내외 경제정책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산업연구원, 1989:16).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피식민지 경험을 하였다는 사실은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각국은 독립후에 자국 영토내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하에 자율적인 경제체제 및 그 영역을 형성해 왔다. 이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경제정책상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성과 주변 국가상호관계에 있어서의 경제적 독립성이 심화되는

36) 실제로 정치인들의 상호불신감은 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67년 6월 캄팔라에서 체결된 동부아프리카 협력조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의 운명이다.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의 긴밀한 협력이 요망되었던 이 공동체는 3국 정상들간의 불신감으로 말미암아 1977년에 와해되고 말았다. 결국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의 경험을 놓고 볼 때 통합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치적 영향을 덜 받는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다(Johnson, 1991:12-13).

결과를 빚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경제통합 내지 국제화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국가개입정도의 완화, 사유화의 단행, 그리고 법적-구조적 재조정등 국내 기존 정책에 많은 수정을 가해야 하나 그것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전체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회원국 상호간 교역량 비중의 작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를 종합해 볼 때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이 극복해야 할 다음과 같은 4가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존재: 이는 지역적 경제협력 및 통합의 정신과 가장 동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국가들은 인접국으로 부터 자국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불어권과 영어권 국가간의 불화는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② 운송과 통신의 어려움: 이는 아프리카의 1차 생산품과 공산품을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운반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가격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해준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우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다.

③ 생산요인의 부족: 노동력의 질적 열악성, 숙련도의 문제, 그리고 원료 및 전기의 부족과 그에 따른 부수적 비용증대 등에 관련된다.

④ 금융문제: 아프리카에는 환전이 가능한 화폐와 그렇지 못한 류가 있다. 가령 서부 아프리카지역만 하더라도 전자는 아프리카재정공동체통화(CFA)와 라이베리아 달러인 반면, 후자에 드는 통화로는 나이지리아, 가나, 감비아, 시에라리온, 기니, 까포베르데, 모리타니아등의 국내화폐등 거의 대다수가 이에 속한다. 이로 말미암아 지역거 래는 통상 관련국의 중앙은행을 경로로 행하여지고 이는 지불결제 및 대체에 있어서 엄청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자본의 빠른 유통이 절대 필요한 대외무역과 역행하고 있다. (니제르에서 나이지리아로의 수출대금지불결제에 통상 12달이 걸린다!)(Igue, 1994:72)

아울러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중-단기 부정적 영향의 극복문제 역시 관건으로 등장한다. 독립된 국가간에 경제통합을 추진할 때 중-단기간동안 각국의 국내적 이익을 해하는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를 적절히 수습 내지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으면 이 역시 부정적 요소로 등장한다. 가령 나이지리아는 1983년 자국 영토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을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ECOWAS에서 시행하던 역내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는 대원칙에 반하는 행위였다(Brown, 1989:251-73). 결국 이러한 이유로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의 현실적 수준은 관련 기구의 형식적 명칭여하에는 관계없이 자유무역지대(FTA) 내지 관세동맹(Customs Union)등 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타당할 것이다(산업연구원, 1989:16).

2. 경제통합움직임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 거의 대부분이 국내 경제규모의 협소, 국민의 숫적 열세를 공동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심하게 분열상태를 보이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화와 접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있다.³⁷⁾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로 여겨져왔던 아프리카 전체 경제통합단계 시간표와 각종 난점을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치의 미비는 새로 출범할 AEC가 치유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어떤 학자는 비록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이 부진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기술상의 난관을 깨달았으며, 아프리카의 정치적 기류가 통합움직임에 낙관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외부 경제협력단체들이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이 잘 진행되도록 원조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보고 있다(Robson, 1983:3; 1985:603-22, 특히 619 이하 참조).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1991년 보고서에서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내전의 진정, 그리고 정치개혁등 3가지를 아프리카 경제의 잠재적 회생을 돕는 요소로 보고 있다.³⁸⁾

결국 아프리카의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가장 큰 관건은 경제통합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의 균등한 배분문제와 남미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프리카 특유의 요소인 과거 식민지세력에 따라 달라져버린 문화적 배경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결국 아프리카 대륙 각국의 정치적 적극성으로서 귀결될 것이다(Robson, 1968:301). 그리고 경제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원천과 그 규모를 객관적으로

37) 어떤 학자는 경제통합의 추구는 이기심과 협동의 함수관계이며, 아프리카의 경우 양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Green & Krishna, 1967:4).

38) OECD, 1991:23-25, 최근 앙골라, 모잠비크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계속되던 내전이 진정됨으로써 이 세 지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던 난민유출사태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인적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포기과 흑인정권의 도래로 기존의 SADCC와 PTA 회원국과의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아울러 보스와나, 모리타니아 그리고 세네갈에서는 민주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베냉, 까포베르데는 새로이 선출된 정부가 들어섰다. 니제르와 다른 나라들 역시 국민의회(national conferences)라는 정치개혁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결정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경제통합의 규모결정'이란 바로 어떤 움직임을 단순한 지역적 경제협력차원에서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발전된 형태인 정치 통합으로 까지 이끌고 갈 것인지를 여부를 결정하는 적절한 통합전략의 마련을 일컫는다.

〈부 록〉

1. 1989년 2월 17일 마라케시에서 채택된 아랍동맹설립조약(Traité portant création de l'Union du Maghreb Arabe) 요지³⁹⁾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아 정부수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조: 명칭 - Union du Maghreb arabe

2조: 동맹의 설립취지

- 회원국과 그들 국민간의 인적 유대감의 강화
- 사회의 발전과 복지의 구현 및 권리보호
- 형평과 정의에 바탕을 둔 평화의 유지
- 여러 분야에서의 공동정책 이행
- 회원국간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상품 및 자본의 자유이동의 실현을 위한 점진적 노력

3조: 2조에서 언급한 공동정책이관

- 국제분야에서는 회원국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협력방안 모색
- 방위분야에서는 회원국의 독립성 유지
- 경제분야에서는 회원국의 산업, 농업, 사회적 발달을 실현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특히 공동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절한 일반-특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문화분야에서는 (생략)

4조: 회원국의 대통령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 최고기관으로 의장은 6개월마다 바뀜

5조: 이사회의 회기 - 정기회의는 매 6개월마다 개최하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6조: 이사회의 결정방식 - 만장일치

7조: 장관회의 - 필요한 경우 회동

8조: 외무장관회의 - 이사회 회기준비 및 각종 위원회와 분야별 장관급 위원회의 작업결과 검토

9조: 위원회의 구성 - 각 회원국에서 한명씩 선임하여 설립되는 위원회는 동맹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그의 작업결과를 외무장관회의에 제출한다.

39) 출처, Paul Balta & Claudine Rulleau: Le Grand Maghreb, *op cit.*, pp.297-301.

10조: 분야별 장관급 위원회의 구성 - 이사회의 직속기관으로서 그 권한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1조: 사무총장 - 각 회원국에서 선임된 대표로 구성되며, 임무수행은 이사회 의장을 맡는 나라에서 한다. 경비는 의장국에서 부담한다.

12조: 자문이사회의 구성 - 각 회원국에서 선임된 10명씩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매년 회기를 가지며,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자문이사회의 임무는 이사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며, 그의 동맹의 활동을 강화하는데 유의한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13조: 사법기관의 구성 - 각 회원국에서 선임된 2명씩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가능하다. 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의장은 1년 임기로 선출된다. 사법기관은 동맹설립조약 및 동맹내에서 체결되는 각종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련된 소송과 이사회에 의해 맡겨진 소송, 일 회원국에 제기한 소송 및 일정한 경우 동맹의 기관에 의해 제기된 소송을 처리한다. 사법기관의 판결은 강제적 및 확정적 효력을 갖는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부탁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다. 소재지와 예산등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4조: 일 회원국에 대한 침략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된다.

15조: 일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보전, 안보 및 정치체제에 위협될 수도 있는 모든 행위 또는 기구의 설치를 그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회원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존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다른 모든 군사적, 정치적 동맹에 가입치 아니한다.

16조: 동맹설립조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제 3국과의 조약체결권 명시

17조: 다른 아랍국가와 아프리카국가에의 동맹설립조약 문호개방

18조: 개정 - 일 회원국의 제안에 따라 다른 모든 회원국의 합의하에 개정

19조: 발효 - 모든 회원국의 국내적 절차를 밟은 후 발효

2. 1991년 채택된 OAU산하 아프리카 경제공동체(AEC) 설립조약 요지⁴⁰⁾

제 1장: 개념정의 (1조)

제 2장: 설립취지, 원칙, 목표와 이행방법등 (2조 - 6조)

제 3장: 공동체의 기관 (7조 - 27조)

40) 출처,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30, 1991, pp.1241-1282.: 국내잡지로서는 『제간 국제법률경영』, 제 11호, 1992년 봄호, pp.7-62.

- 7조: 기관의 개관
- 8 -10조: 국가와 정부수반총회
- 11-13조: 각료이사회
- 14조 : 범아프리카의회
- 15-17조: 경제사회위원회
- 18-20조: 사법재판소
- 21-24조: 사무국
- 25-27조: 전문기술분과위원회
- 제 4장: 지역경제공동체 (28조)
 - 28조 :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성화 방안모색
- 제 5장: 관세동맹과 무역의 자유화 (29조 - 42조)
- 제 6장: 사람의 자유이동과 거주 및 회사설립의 권리 (43조)
- 제 7장: 통화, 재정 및 지불 (44조 - 45조)
- 제 8장: 식량과 농업 (46조 - 47조)
- 제 9장: 산업, 과학, 기술, 탐사, 국내자원 및 환경 (48조 - 60조)
- 제 10장: 운송, 통신 및 관광 (61조 - 66조)
- 제 11장: 표준화와 도량체제 (67조)
- 제 12장: 교육, 훈련 및 문화 (68조 - 70조)
- 제 13장: 인적 자원, 사회문제, 보건 및 인구 (71조-76조)
- 제 14장: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및 조화 (77조)
- 제 15장: 일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규정 (78조 - 79조)
- 제 16장: 연대, 개발 및 보상기금 (80조 - 81조)
- 제 17장: 재정에 관련된 규정 (82조 - 86조)
- 제 18장: 분쟁의 해결 (87조)
- 제 19장: 공동체와 지역경제공동체, 지역기구, 아프리카내 비정부간기구 및 기타 사회경제기구와의 관계 (88조 - 91조)
- 제 20장: 공동체와 제 3국 또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 (92조)
- 제 21장: 회원국과 제 3국, 지역 및 하부지역기구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관계 (93조 - 95조)
- 제 22장: 기타 조항 (96조 - 106조)

〈참 고 문 헌〉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국

1992 “세계경제의 지역적 통합현상과 한국경제의 진로”, 입법참고자료 제 284호, 320p.

대한무역진흥공사

1990 “아프리카 주요국의 투자환경과 진출유망분야”, 무공자료 90-74, 220p.

대한무역진흥공사

1992 “남부아프리카 시장진출전략”, 무공자료 92-69, p.330.

대한무역진흥공사

1991 “아프리카 경제편람”, 무공자료 91-81, 319p.

산업연구원

1989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심화추이와 우리의 대응”, 41p.

김기환

“남부아프리카 지역통합의 전개양상과 한계요인에 관한 연구: SADCC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71p.

박원탁

1989 『아프리카 지역정치론』, 478p.

박원탁, 정영태

1991 “서아프리카 지역통합”, 『아프리카연구』, 제 6호, pp.5-69.

심의섭

1990 『아프리카 경제론』, 436p.

임진대

1993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 경향과 아시아-태평양 비역블럭화의 가능성”,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월보, 10월호, pp.114-133.

Ajulo(S,B)

1989 “the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27, no.2, pp.233-250.

Belaïd(S)

1991 “le Traité de Marrakech et la construction de l’Union du Maghreb Arabe”, in *Le Droit international au service de la paix, de la justice et du développement*, pp.125-135.

Balta(P)

- 1990 *Le Grand Maghreb: des indépendances à l'an 2000*, 326p.
- Boutros-Ghali(B)
- 1976 "le système régional africain", in *Régionalisme et universalisme dans le droit international contemporain*, pp.61-72.
- Coussy(J) & Hugon(Ph):
- 1991 *Intégration régionale et ajustement structurel en Afrique sub-saharienne*, 305p.
- Crum(D.L)
- 1984 "Mali and the UMOA: a case study of economic integration", i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22, no.3, pp.469-486.
- D.Carreau, Th,Flory & P.Juillard
- 1990 *Droit international économique*, 3ème ed., p.725.
- Green(R.H) & Krishna(K.G.V)
- 1967 *Economic Cooperation in Africa: Retrospect and Prospect*, 160p.
- Hugon(Ph)
- 1993 "l'Afrique entre la marginalisation économique et la reprise économique", *Revue Africaine de Politique Internationale*, no.15, novembre, pp.55-63.
- Igue(J.O)
- 1994 "Marchés africains et problématique d'intégration régionale", *Revue Africaine de Politique Internationale*, no.16, février, pp.67-78.
- Johnson(O.E.G)
- 1991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Enchancing prospects for success",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29, No.1, pp.1-26.
- Landdau(A)
- 1990-91 "les Pays africains dans les négociations économiques internationales: éléments d'un paradoxe", in *Année Africaine*, pp.21-41.
- Ngom-Ngoudi
- 1971 *La Réussite de l'intégration économique en Afrique*, 141p.
- OECD
- 1991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and Policies of the Member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Report, 258p.
- Okolo(J.E)
- 1989 "ECOWAS: Regional cooperation regime", in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32, pp.111-137.

Robson(P)

1985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crisis in sub-saharan Africa", in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vol.23, no.4, pp.603-622.

Robson(P)

1968 *Economic Intergration in Africa*, 320p.

Robson(P)

1983 *Integration, Development and Equity: Economic Integration in West Africa*, 181p.

Seidl-Hohenveldern(I)

1986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R.C.A.D.I.*, III, pp.13-264.

Achivements, Problems and Prospects of Afric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Movement

Ki-Gab Park

After independence, African States entered into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arrangements *inter se*. The problem of assessing the value of existing arrangements for economic integration in Africa is difficult. This article examines, first of all, achivements and problems of existing Afric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movement by division of Africa into five (5) regions namely North Africa, West Africa, Central Africa, East Africa and southern Africa. And we found out that:

- 1) certain States play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each movement.
- 2) even though the trend towards economic integration is common today on the African scene, the record of African regional integration has not been outstandingly successful.
- 3) the polarisation of movements in the same region seems to create negative effects.

Secondly, this article tries to foresee the prospect of new African Economic Community(AEC) established in 1991 by OAU. And we found out its principal

characteristics:

1) The Community shall be established gradually in order to increase economic self-reliance and promote and endogenous and self-sustained development of Africa.

2) The Community shall be established in six (6) stages following the time-table and justify a larger and fuller economic integration of Africa in future.

In the part of General Conclusion, we consider what are reasons for the negative experience with regional cooperation in Africa and what is realistically suggested for the potential contribution of regional cooperation to overcoming the African crisis. And those are: set out the proper strategy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lanning, involve any workable integration programme; emphasises the need to promote a fair and equitable distribution of benefits, etc. No doubt the really crucial factors in the progress of integration are the political will to integrate and a willingness to compromise.

박기갑,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옥천동 1번지

Tel : (0361) 58-1344, Fax : (0361) 56-4133